

## 일시 취재 (C-1)

### 신청 요건:

- 몽골의 신문, 방송, 잡지,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, 단기간 취재,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
- 외국의 보도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,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
-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 하려는 자

일시 취재 비자로 대한민국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몽골 거주자는 반드시 **비자신청센터**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 단수비자(최대 체류기간 90일)를 신청할 수 있으며, 6개월 안에 재입국의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더블비자(유효기간 6개월, 최대 체류기간 90일)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사증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### 공통서류

1. 사증발급신청서 (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.5x4.5 cm 컬러사진)
2. 여권 원본 및 사본 (사증신청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동안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)
3. 혼인관계증명서
  - 미성년자(19세 미만자)의 경우, 본인의 출생증명서(부모의 생년월일이 미기재된 경우 부모 신분증사본 제출)
4. 파견(출장)증명서
5. 재직증명서 또는 기자증(외신보도증)
6. 사업자등록증 사본